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9. 26 선고 2022가단213041(본소), 2023가단294771(반소) 판결
[공사대금 · 공사비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주식회사 A

피고(반소원고)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

담당변호사 김봉학

변 론 종 결 2024. 8. 29.

판 결 선 고 2024. 9. 26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125,857,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. 11. 7.부터 2024. 9. 26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3.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192,703,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피고 : 원고는 피고에게 125,857,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6. 1.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.

다툼 없는 사실, 원,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(건설면허가 없어 소외 주식회사 C 등의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함)는 2020. 11. 16.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점포 및 주택건물의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210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, 이하 특별한 설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), 공사기간 2020. 11. 1.부터 2020. 12. 30.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(이하 '이 사건 공사계약'이라 한다)받은 사실,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다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비 지급 등의 문제로 마찰이 생기자 그 공사를 중단하고 2021. 5. 14. 관할구청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실, 위 시기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213,229,000원(원고는 212,559,000원이라고 주장하나, 이는 피고가 2021. 3. 3. 송금한 670,000원을 누락한 결과로 보인다)인 사실이 인정된다.

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 공사대금 중 38,71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과 추가공사대금 153,993,7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원고의 기성고 등을 공제한 반소청구 취지 기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.

살피건대,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

기성고 비율이 31.01%이고 추가공사비가 13,700,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, 피고가 위 감정결과에 따라 앞서 본 당초 약정 공사비 210,000,000원보다 다액인 소요 총공사비 211,979,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시공 소요 공사비 65,729,000원을 원고의 실제 공사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, 원고가 지급받을 미지급 공사대금은 없고,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125,857,100원[= 213,229,000원 - (65,729,000원 + 13,700,000원) x 1.1]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25,857,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반환의 의사를 구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3. 11. 7.부터(피고는 2021. 6. 1.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함)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. 9. 26.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조중래